

「만수6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」 일부개정 공고

「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0조(시행규칙 등) 규정에 의거하여 「만수6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」을 일부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☐ 주요 개정 내용

- 제10조(임원구성 등) 개정
 - 자치회장 연임 규정 변경
 -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 증빙을 위한 자격 조항 신설
- 제28조(수강생 준수사항) 개정
 - 강제 조치 사항 등 신설
- 제29조(사용료 등 징수 및 관리) 별표2 개정
 - 감면프로그램 가능 개수 신설

☐ 개정 유형 : 일부개정

☐ 시 행 일 : 2026. 4. 8.

☐ 붙임 : 「만수6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」

2026. 4. 10.

만수6동 주민자치회장

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10조(임원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	제10조(임원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. 다만 자치회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26. 4. 8.)
제28조(수강생 준수사항) ① 수강생 본인 부주의로 인한 귀중품 분실은 자치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. ② 수강생 및 동반가족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발생은 본인이 책임진다. ③ 운동 프로그램 수강생은 수강 전에 몸이 불편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강사와 상의한 후 프로그램에 참가한다. ④ 수강생은 조례, 시행규칙 및 운영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	제28조(수강생 준수사항) ①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③ ----- ----- ----- ④ ----- ----- ⑤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, 동장은 즉시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외(강제퇴출)할 수 있으며, 이를 수강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. (신설 2026. 4. 8.) 1. 신체적 폭력, 협박, 기물 파손 등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. 강사·수강생·직원 등에 대한 폭언·욕설·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 3. 프로그램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4.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질서와 운영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⑥ 동장은 제5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(신설 2026. 4. 8.)
<신설>	
<신설>	
[별표2] 주민자치센터 사용료(수강료) 감면기준과 비율(제29조제5항 관련) <신설>	[별표2] 주민자치센터 사용료(수강료) 감면기준과 비율(제29조제5항 관련) ※ 감면프로그램 가능 개수는 1인 1강좌로 한다. (신설 2026. 4. 8.) 부칙(개정 2026. 4. 8.) 제1조(시행일) 이 운영세칙은 2026. 4. 8.부터 시행한다.